|  |  |  |
| --- | --- | --- |
| **민용항공 승객의 '이동식 충전기' 휴대 규정 재천명 공고**2015년 5월부터 이동식 충전기로 인한 항공기내 안전사고가 여러건 발생하여 항공운수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항공운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승객의 이동식 충전기 휴대 규정을 다음과 같이 재천명한다.1. 이동식 충전기의 위탁수하물 내 지입을 엄격히 금지한다.2. 최대허용 전력량이 160Wh를 초과하는 이동식 충전기의 휴대를 엄격히 금지한다. 최대허용 전력량이 100Wh 이상 160Wh 이하인 이동식 충전기는 항공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휴대가 가능하며 2개를 초과하여 휴대할 수 없다.3.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이동식 충전기의 휴대를 엄격히 금지한다.4. 비행 중 이동식 충전기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5. 객 본인의 개인사용 목적이 아닌 기타 목적으로 이동식 충전기를 휴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상기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이 심각성에 근거하여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한다.상기 규정은 조종사·승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이 공고는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중국민용항공국2015년 8월 14일 |  | **关于重申民航旅客携带“充电宝”乘机规定的公告**2015年5月份以来，民航航班上发生了多起充电宝引发的不安全事件，给航空运输安全带来安全隐患。为确保航空运输安全，现将旅客携带充电宝乘机的规定重申如下：一、严禁在托运行李中携带充电宝。二、严禁携带额定能量超过160Wh的充电宝；携带额定能量超过100Wh但不超过160Wh的充电宝，必须经航空公司批准且不得超过两个。三、严禁携带标识不清的充电宝。四、严禁在飞行过程中使用充电宝。五、严禁非个人自用目的携带充电宝。对于违反上述规定者，公安机关将根据情节，依照国家有关法律、法规严肃处理。上述规定同时适用于机组人员。本公告自公布之日起施行。中国民用航空局2015年8月14日 |